

## 물품관리규정 발췌

제6조(물품관리자등의 업무) 물품관리자와 물품을 사용하는 자는 물품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물품을 관리(보관포함)하고 사용한다.

제61조(손망실 보고) ①손망실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소관 분임물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.

②분임물품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보고에 의한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한 손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.

1. 발생일시 및 장소
2. 품명, 규격, 단위, 수량 및 가액
3. 발생원인
4. 발생후 조치사항
5.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진술내용
6. 기타 참고사항

③물품관리책임자는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의 물품관리자가 제6조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에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장 및 감사에게 보고한다. (개정 2009.3.20)

제62조(손망실 처리) ①물품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제6조의 규정에 위배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변상을 명한다. (개정 2009.3.20)

②변상방법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신품 또는 사용가능품의 손망실의 경우에는 현물로 변상할 수 있다.

③제2항에 의한 현금변상 시 그 가액은 손망실 당시의 시가(손망실 시기가 불분명할 때에는 손망실의 사실 발견 당시의 시기)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현물 변상 시는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가 손망실 된 물품의 상태 이상이어야 한다.

제63조(책임의 한계)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에 따른 직원의 책임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### 1. 직접책임

손망실품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물품의 직접 취급자인 물품운용자(물품을 직접 보관 또는 사용하는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)에게 있다. 다만, 실제로 손망실을 초래하게 한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직접책임을 진다.

### 2. 분할책임

2인 이상의 직접 물품취급자(물품운용자)의 행위로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망실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정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.

### 3. 연대책임

상급 물품관리자 또는 직원이 관련되어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직접 동조한 모든 관계 직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

### 4. 감독책임

가. 직접 물품취급자를 감독하는 물품관리자는 직접 자기가 물품손망실의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직접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다만 간접적인 물품손망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전 조치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.

나. 직접책임을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1차 감독책임자가 책임을 진다.

### 5. 재난에 의한 책임

화재, 수재, 지진, 기타의 재난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분임물품출납담당자 또는 물품운용자가 책임을 진다. (개정 2009.3.20)

### 6. 도난에 의한 책임

도난에 의하여 물품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도 제5호에 준한다.